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0. 12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, 장애인 가족 지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 가족 지원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3)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4)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,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,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 수립,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 장애 관련 정책과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장애당사자에게 집중 되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은 일상에서 경제적인 부담, 부정적인 정서경험,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.

- 결국,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그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, 편의를 내세운 일괄적인 정책보다는, 가족 구성원 마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세심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·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
- 안 제5조는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

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
- 안 제6조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안 제7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마포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.

○ 2020년 11월말 기준 우리구 등록장애인수는 12,949명으로 이는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 372,320명의 3.48%에 해당합니다. 거주지역 별로는 성산2동, 공덕동, 상암동 순이고,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5,598명 43.23%로 가장 많으며, 이어 청각 장애인, 시각장애인, 뇌병변장애인 순으로 확인 되었습니다.(표 참조)

○ 검토의견 입니다.

장애인 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소관 부서에 서는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수립,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